

군산시 공고 제2015-1292호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 시책 강화, 양성평등 효과 강화를 위한 성 주류화 조치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과 관련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함
(안 제1조~제5조)
- 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시정참여 확대, 공직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4조)
- 라.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모·부성 권리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방지대책, 여성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21조)

- 마.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주간, 여성단체의 지원, 유공자 포상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마련(안 제23조~제26조)
- 바.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38조)
- 사. 양성평등기금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제48조)
- 아.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9조~제50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가족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여성정책계)

- 전화 : 063)454-3214, FAX : 452-9477, 전자우편 : dooji12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454-32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란 법 제51조의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양성평등의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 및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이 평등하

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참여 촉진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단절·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인력개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출산·수유·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정보화 능력향상 및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정책 확립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9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

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방지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0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 교육 등)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

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단체 지원) ① 시장은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관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동
2.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3.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비
4.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시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제3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동)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동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동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동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4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가족청소년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업무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기금지원의 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한다.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및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여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6조(여성발전 기본 조례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를 각각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을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군산시여성발전기금,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군산시양성평등기금,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337호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시장의 구역 및 시설물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안 제2조 ~ 제5조)
- 라. 인정시장의 인정 기준 등(안 제6조 ~ 제10조)
- 마.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및 관리
(안 제11조 ~ 제14조)
- 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및 관리(안 제15조 ~ 제17조)
- 사. 상인회 설립 및 등록(안 제18조 ~ 제25조)
- 아.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안 제26조 ~ 제27조)
- 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28조 ~ 제33조)
-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안 제34조 ~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063-454-2702, FAX 454-26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

(☎ 063-454-27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산시장이 개설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산시장에게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산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군산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산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

다.

③ 군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 조례」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군산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

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산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산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산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산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산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영 제6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산시장은 제외한다)는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

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 산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산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8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산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산시장은 그 내용을 군산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산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산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군산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산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산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산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

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관리) ① 군산시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주차장 조례」,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산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감독) ① 군산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산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4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산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산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산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산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산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산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3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납 입 장 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 입 장 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수입일 무 인			수입일 무 인			수입일 무 인		
군 산 시 장(인)			군 산 시 장(인)			군 산 시 금 고 귀하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은행 ○○지점

(별지 제2호서식)

영수증

영수필통지서(2)

영수필통지서(1)

납부통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 의무 자	단체명 성명 주소		납부 의무 자	단체명 성명 주소		납부 의무 자	단체명 성명 주소		납부 의무 자	단체명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입 기한	년 월 일		납입 기한	년 월 일		납입 기한	년 월 일		납입 기한	년 월 일	
납입 장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수입일 부인			수입일 부인		수입일 부인		수입일 부인		수입일 부인		
군 산 시 장(인)			군 산 시 장(인)		군 산 시 장(인)		군 산 시 금 고 귀하		○○은행 ○○지점		

A80 × 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 × 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 × 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 × 160mm
신문용지 54kg/m²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인)</p>			
<p>군 산 시 장 귀하</p>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군산시 공고 제2015 - 1340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1.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5. 7.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민간위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근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및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심의회 대상에 무상의 회계 간 재산이관에 대한 사항 추가와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대장가격 → 기준가격)하고, 심의대상 기준가격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안 제3조)
-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변경(안 제10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으로 제출시기 변경
- 라. 대부료의 조정을 반영(안 제32조)
 전년대비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에 따른 '조정감액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개정사항 반영
- 마.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자와 관련 인용조문 변경(안 제3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변경
- 바. 조원원가 매각금액 산정에 인건비 포함 (안 제37조)
 지자체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을 위해 매각가격 산정시 인건비 포함 상위법 적용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 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
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85,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moonmisuk@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4-2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2항에 제6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이관

제3조제3항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액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액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액 3천만원”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군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한다.) 의원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계장으로 한다.

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⑬ 심의회의 위원중 군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⑮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산시의회”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5이상”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매입비”를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 처분</u></p> <p>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동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u>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u> 나. 읍 · 면 지역 : 990제곱</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법 제12조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이관</p> <p>③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기준가액 3천만원</u> ----- -----</p> <p>4. ----- -----</p> <p>가. ----- -----<u>기준가액 3천만원</u> -----</p> <p>나. -----</p>

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
 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신 설>

----- 기준가액 3
천만원이하 -----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
 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
 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담당
 국장, 군산시의회(이하"시의회
 "라한다.) 의원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
 가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
 하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

람 중 국유·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계장으로 한다.

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⑬ 심의회의 위원중 군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⑮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
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
 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3. (생략)

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
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
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산시의회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

----- 5이상 -----

-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3. (생략)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 ⑤ (생략)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 1. ~ 4. (생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조성원가 매각) -----

----- 인건비,
토지매입비 -----
-----.

- 1. ~ 4.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15-11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8월 2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구암동, 개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나. 명 칭 : 154kV 동군산~장항,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인출정비공사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결 정		실시계획(변경)인가		비 고
		위 치	연장 (km)	당 초	변 경	
전기공급 설비	제1송전선로	군산시 구암동, 개정동	2.147	케이블헤드 667㎡	케이블헤드 667㎡ 선하지 3,225㎡	군산고 94 (15.7.17)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 2014. 5. 23. ~ 2015. 09. 30.

변경 : 2014. 5. 23. ~ 2015.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구암동	276-5	답	2,625	667	박중희	군산시 구암동 316-2	한국전력 공사	-	구분 지상권	철탑
2	군산시 구암동	125-2	구	5,681	78	한국농어 촌공사	-	-	-	-	선하지
3	군산시 구암동	284	대	2,202	621	오금수	군산시 경암동 656-19	-	-	-	선하지
4	군산시 구암동	286-2	답	2,881	562	박중희	군산시 구암동 316-2	한국전력 공사	-	구분 지상권	선하지
5	군산시 구암동	286-5	답	2,881	656	이성근	군산시 양안1길 45	한국전력 공사	-	구분 지상권	선하지
6	군산시 구암동	288	답	2,942	194	이길순	군산시 신영동 10-20	한국전력 공사	-	구분 지상권	선하지
7	군산시 구암동	289-3	답	2,080	63	양병성 외 1인	군산시 서수송2길 23, 103동 1601호(나운동,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한국전력 공사	-	구분 지상권	선하지
8	군산시 구암동	289-5	답	5,254	971	김경자 외 1인	익산시 마동 137-1 주 공아파트 209-103	-	-	-	선하지
9	군산시 구암동	604	구	3,575	80	농림부	-	-	-	-	선하지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임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5-111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8월 2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사업
 -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도 로 : 45,163㎡ (총 12개 노선)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1	4	35~38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228 ('86.5.23)	
시행	대로	1	4	35~38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	-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 도로	7,790 (249)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건고228 ('86.5.23)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간선 도로	7,790 (249)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3	6	25~28	보조간선도로	2,915 (343)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도로	6토지구획	건고525 (‘67.7.25)	
시행	대로	3	6	25~28	보조간선도로	2,915 (343)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도로	6토지구획	-	
결정	대로	3	47	25~31	보조간선도로	715 (715)	대로3-6	대로2-4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대로	3	47	25~31	보조간선도로	715 (715)	대로3-6	대로2-4	일반도로	-	-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750 (422)	중로2-65	조촌동 664번지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750 (422)	중로2-65	조촌동 664번지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3	15	집산도로	848 (311)	중로2-65	대로1-4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중로	2	143	15	집산도로	848 (311)	중로2-65	대로1-4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8	15	집산도로	129 (129)	대로3-6	중로2-143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중로	2	148	15	집산도로	129 (129)	대로3-6	중로2-143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	
결정	소로	3	773	7	국지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7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소로	3	773	7	국지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7	일반도로	-	-	

나. 녹지 : 16,687m² (총 6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번)	3,857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번)	3,857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번)	1,865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번)	1,865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0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0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0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0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번)	766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번)	766	-	
결정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번)	4,589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번)	4,589	-	

다. 광 장 : 3,042m² (총 1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광장	광장32	조촌동474-3	3,042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광장	광장32	조촌동474-3	3,042	-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박건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생략

8. 관계도서: 실음생략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1-4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450-13	대	11,477	2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2	조촌동	450-14	대	970	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3	조촌동	465-1	대	34	2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4	조촌동	465-5	구	261	17	군산시					
5	조촌동	471-2	구	13,976	30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조촌동	711-9	도	300	15	국토교통부					
7	조촌동	716-2	구	288	17	국토교통부					
합 계				27,306	401						

2) 대로 2-4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구암동	320-4	장	387	8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구암동	321-8	대	379	33	군산시					
3	조촌동	2-6	장	136,947	11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합 계				137,713	226						

3) 대로 3-6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4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2	조촌동	439-4	도	1,049	45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3	조촌동	447-4	구	182	42	군산시					
4	조촌동	450-3	구	380	86	군산시					
5	조촌동	465-5	구	261	67	군산시					
6	조촌동	472-4	잡	89	24	군산시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조촌동	473-2	도	770	200	군산시					
8	조촌동	474-5	대	175	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9	조촌동	479-3	구	273	6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10	조촌동	711-9	도	300	14	국토교통부					
11	조촌동	716-2	구	288	16	국토교통부					
합 계				140,714	1,040						

4) 대로 3-47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구암동	320-4	장	387	7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구암동	321-8	대	379	104	군산시					
3	조촌동	2	장	288,000	81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4	조촌동	2-6	장	136,947	17,42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5	조촌동	479-3	구	273	15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합 계				425,986	18,575						

5) 대로 3-48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	장	288,000	4,61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조촌동	2-6	장	136,947	4,98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3	조촌동	471-2	구	13,976	4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조촌동	651-4	대	7,220	38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5	조촌동	651-8	구	586	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조촌동	659	대	6,608	1,19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7	조촌동	661-2	구	982	202	이서운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광주지방교용 노동청의산지청		압류	지분3/9		
								유현수	군산시 나운동 109-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1동 1203호			근저당	
								김미숙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지분2/9
								김병관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유현수	군산시 조촌동 771 신우하나로 아파트 1220호
김미자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근저당	지분2/9									
합 계				454,319	11,883								

6) 중로 2-142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	장	288,000	1,59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조촌동	2-6	장	136,976	99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합 계				424,976	2,585						

7) 중로 2-143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2,76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2	조촌동	450-13	대	11,477	1,39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3	조촌동	450-2	대	7,701	65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4	조촌동	471-2	구	13,976	4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합 계				170,101	5,273						

8) 중로 2-147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1,44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합 계				136,947	1,449						

9) 중로 2-148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1,88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2	조촌동	439-4	구	1,049	10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합 계				425,996	1,997						

10) 중로 3-74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	장	288,000	60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합 계				288,000	602						

11) 종로 3-75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83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136,947	838						

12) 소로 3-773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29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136,947	294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8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구암동	321-14	대	453	17	군산시					
2	구암동	321-15	도	653	24	군산시					
3	구암동	512-20	도	218	13	군산시					
4	구암동	513-1	장	2,460	65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5	구암동	513-5	대	1,834	86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6	구암동	516-1	대	413	25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7	구암동	607-1	구	205	52	국토교통부					
8	구암동	608-1	도	169	19	국토교통부					
9	구암동	609-1	구	33	14	국토교통부					
10	조촌동	2-6	장	136,947	77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1	조촌동	649-2	대	2,420	36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2	조촌동	651-8	구	586	10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조촌동	659	대	6,608	1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4	조촌동	660-10	대	678	3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15	조촌동	660-8	철	750	6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16	조촌동	661-5	철	122	8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17	조촌동	712	도	56	14	국토교통부					
18	조촌동	732	구	1,455	87	국토교통부					
합 계				156,060	3,857						

2) 완충녹지113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450-13	대	11,477	8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2	조촌동	450-14	대	970	15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3	조촌동	471-2	구	13,976	83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조촌동	711-9	도	300	28	국토교통부					
5	조촌동	716-2	구	288	6	국토교통부					
합 계				27,011	1,865						

3) 완충녹지114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조촌동	450-15	대	9,917	999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2	조촌동	450-16	대	2,849	4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3	조촌동	471-2	구	13,976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조촌동	659	대	6,608	1,42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5	조촌동	659-1	대	2,044	2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지동,해성2빌딩)				
합 계				35,394	3,220						

4) 완충녹지115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51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	조촌동	450-15	대	9,917	342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3	조촌동	450-16	대	2,849	43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4	조촌동	450-2	대	7,701	1,09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157,414	2,390						

5) 완충녹지116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76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136,947	766						

6) 연결녹지117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4,58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136,947	4,589						

(2) 광장

1) 광장32

일련 번호	토지소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58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	조촌동	439-4	구	1,049	15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3	조촌동	447-2	전	23	23	군산시					
4	조촌동	447-3	구	126	12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5	조촌동	447-4	구	182	50	군산시					

일련 번호	토 지 소 계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 별	지 번	지 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6	조촌동	450-13	대	11,477	13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7	조촌동	450-14	대	970	30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8	조촌동	450-2	대	7,701	29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9	조촌동	450-3	구	380	127	군산시					
10	조촌동	450-5	구	76	76	군산시					
11	조촌동	450-6	대	159	15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2	조촌동	465-1	대	34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13	조촌동	465-5	구	261	38	군산시					
14	조촌동	472-4	잡	89	62	군산시					
15	조촌동	472-7	구	23	23	군산시					
16	조촌동	472-8	잡	40	40	군산시					
17	조촌동	473-2	도	770	433	군산시					
18	조촌동	474-3	구	139	139	군산시					
19	조촌동	474-5	대	175	12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20	조촌동	711-9	도	300	67	국토교통부					
21	조촌동	716-2	구	288	78	국토교통부					
합 계				161,209	3,042						

군산시 고시 제 2015-112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9. 01.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 - 1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31.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디오션시티 A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코리아신타주식회사
 - 나. 대표자 : 최익중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주식회사대우건설
 - 나. 대표자 : 박영식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1가)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6번지의외 10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60,574.0000㎡
 - 다. 건축면적 : 8,599.9817㎡
 - 라. 연 면 적 : 201,442.1695㎡
 - 마.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최고 29층, 아파트 11개동, 1,400세대

바.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59A형	민영주택	189	59.9841	22.0001	81.9842	
59B형	민영주택	55	59.2389	23.1414	82.3803	
74A형	민영주택	279	74.8808	26.7946	101.6754	
74B형	민영주택	110	74.7985	27.5146	102.3131	
74C형	민영주택	113	74.7940	27.4935	102.2875	
84A형	민영주택	215	84.7077	29.8043	114.5120	
84A1형	민영주택	128	84.5682	29.7672	114.3354	
84B형	민영주택	135	84.5547	30.8807	115.4354	
84C형	민영주택	127	84.0423	31.6073	115.6496	
99A형	민영주택	49	99.4628	35.2271	134.6899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업비 : 315,453,655천원

자. 사업기간 : 2015년 10월 1일 ~ 2018년 2월 28일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사업계획승인일 : 2015. 8. 27.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315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부지면적 : 39,331m²
- 사업규모
 - 환경에너지시설(소각시설 및 여열회수시설) : 시설용량 200톤/일(24시간/일, 330일/년 운전)
 - 환경자원시설(재활용품 선별시설) : 용량 20톤/일(6시간/일, 300일/년 운전)
 - 환경순환시설(기 매립구역의 굴착·선별·재매립하기 위한 시설) : 순환형 매립시설
재조성 용량 644,600m³
 - 주민 편익시설 : 연면적 1,784.54m²
- * 단, 시설용량은 운영일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 추정 총사업비 : 111,065백만원(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2.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 제3자 제안요청 공고기간 : 90일
- 건설보조금
 - 환경에너지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 새만금 반입량 제외) : 건설비의 50% 이하

- 환경자원시설(재활용선별) : 건설비의 30% 이하
- 환경순환시설(순환형매립장) : 40%(정비 50%, 조성 30%)
- 운영수입보장 : 없음
- 사용료 : 165,055원/톤 이하
- ※ 2단계 평가 시 산정식 : $\{(\text{최저제안 사용료}) \div (\text{제안 사용료})\} \times \text{가격배점}(200\text{점})$
- 사업제안서 평가 : PQ, 기술부문(550점), 가격부문(450점)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 0%
 - 1단계(PQ) 제안서 제출일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 2단계 제안서 제출일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 1단계(PQ)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제안서 제출
- 제안자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제안자가 5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에 이중으로 제안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20%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
 - 재무적투자자의 출자비중 50% 이상시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15%로 하향조정가능

3.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4.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063-454-3453)로 문의바람.

첨부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실음생략)

국방부 고시 제2015 - 25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42
 - 면 적 : 30m²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8. 1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30	30						
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42	대지	30	30	담장 및 유류 배관	계획관리 지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27	강동자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 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